

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8
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6일

발의자 : 이창열 의장

찬성자 : 김성기, 김광성

남진삼, 심현정

임현우, 김진옥 의원

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저출산문제 해결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『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한다.
-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평창군은 인구감소와 저출산·고령화의 심화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,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.
-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평창군의 인구는 2015년 12월 말 4만3천5백명에서 2025년 12월 말 3만9천8백명으로 감소하여 인구 4만 명의 선이 무너졌으며,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212명에서 2025년 105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여 미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.
- 평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

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,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- 이에 제9대 평창군의회에서 2025년 1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 까지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주민제안 공모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, 우수 정책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한바,
- 이러한 성과 및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,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이 평창군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「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1항

활 동 계 획

1. 활동목적

- 지역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평창군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
- 저출산·고령화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 상황 점검 및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다각적인 정책방안 마련 지원

2. 구성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1항

3. 활동기간

- 특위 2026년 7월 13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4. 구 성

- 김성기 의원, 김광성 의원, 남진삼 의원,
심현정 의원, 임현우 의원, 김진옥 의원

5. 운영계획

- 저출생·고령화 관련 현황 및 대응상황,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점검
-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의회 차원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
- 중장기 지역소멸 대책 등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